|  |  |  |
| --- | --- | --- |
| **기준초과 소규모납세자 탈세액수**  **확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  세총함[2015]311호  헤이룽장(黑龍江)성 국가세무국 :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증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증 관리방법> 일부 조항 처리의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10]139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헤이룽장(黑龍江)성 국가세무국이 제출한 <기준초과 소규모납세자 탈세액수 확정에 관한 지시 요청서>(흑국세발[2014]8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조사 보충 매출액과 납세평가 조정 매출액을 조사 보충 납세 신고 당월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을 확정한다.  납세자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규정된 기한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세무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사항통보서>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일반납세자 인증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사항통보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의 매출액은 증치세 세율에 따라 과세액을 산정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세무기관이 송달한 <세무사항통보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의 매출액은 소규모납세자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3%의 세율로 과세액을 산정한다.  헤이룽장(黑龍江)성 국가세무국이 관할대상기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조세사항은 상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중, 체납급과 과태료의 계산 등 문제는 기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국  2015년 6월 11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界定超标准小规模纳税人偷税数额的批复**  税总函〔2015〕311号  黑龙江省国家税务局：  　　你局《关于界定超标准小规模纳税人偷税数额的请示》（黑国税发〔2014〕85号）收悉。根据《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若干条款处理意见的通知》（国税函〔2010〕139号）有关规定，批复如下：  　　稽查查补销售额和纳税评估调整销售额计入查补税款申报当月的销售额，以界定增值税小规模纳税人年应税销售额。  　　纳税人年应税销售额超过小规模纳税人标准且未在规定时限内申请一般纳税人资格认定的，主管税务机关应制作《税务事项通知书》予以告知。纳税人在《税务事项通知书》规定时限内仍未向主管税务机关报送一般纳税人认定有关资料的，其《税务事项通知书》规定时限届满之后的销售额依照增值税税率计算应纳税额，不得抵扣进项税额。税务机关送达的《税务事项通知书》规定时限届满之前的销售额，应按小规模纳税人简易计税方法，依3%征收率计算应纳税额。  　　你局对所属企业实施税务检查，发生的具体涉税事项，应按上述原则处理。其中，涉及滞纳金和罚款的计算等问题，仍按照相关规定执行。    国家税务总局  2015年6月11日 |